

---

# 고령화 사회에 있어 시민후견인의 활성화 방안 -일본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병주\*

## A Study on Activation of Citizen Guardians in Aging Society

Byeong-Joo Jeon\*

**요 약**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국가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후견인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에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가 지향됨에 따라 시민후견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관계사건을 분석하여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시민후견인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고령화 사회,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 시민후견인, 사회화

**Abstrac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akes effect from July 2013, to protect adults who need protection due to insufficient ability to judge, and help them lead a normal life. It is very important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country's through the analysis of Japan that already performs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rough which there is a need to prepare basis to accomplish the optimal system in advance.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 quality guardians above all,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importance of citizen guardians is ever increasing as especially the 'socializ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supported recentl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rends in the types of the guardians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adult guardianship inci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and the ways to activate the system focused on the citizen guardians.

**Key Words** : aging society, adult guardianship system, adult guardians, citizen guardians, socialization

---

### 1. 서론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총인구의 11.8%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해당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를 맞게 된다[18]. 이러한 노인의 건강상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저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1].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환자는 2011년 534천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9.1%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그 질환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6]. 또한,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경향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중이 18.9%로 나타났으며, 그들 중에서 독거노인가구는 총 가구의 6.6%를 차지했으며, 2035년에는 이러한 가구가 15.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8]. 이와 같이 빠른 고령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가구 소규모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에 대한 보호 잠재력이 감소하고 가구 내 돌봄 공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14]. 최근에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

---

\*충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논문접수: 2013년 1월 31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2월 28일, 확정일: 2013년 4월 20일

으므로 가족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8].

한편, 기존의 행위무능력자를 규율하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성질을 갖고 있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노인의 권리와 법률관계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그들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4][9][10]. 특히, 기존의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서 비롯된 신상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오늘날의 다변화된 사회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타났다[13].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그들이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판단력을 성년후견인을 통하여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2][12][17],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방식과는 다르게 계약형태로 그 방식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7]. 결국, 정부는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시행을 몇 개월 앞두고 있다. 이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1960년 이래 요보호성년자에 대한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목표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그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3]. 이러한 국가들은 전 인구의 1%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 초기에 약 50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16][27]. 이러한 요보호성년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의 후견적 역할이 더 강화된 사회보장적 의미의 제도[12]를 통해서 그들이 일상에서 온전한 삶을 향유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에서 기존의 금치산·준금치산제도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급속한 가족사회의 해체로 인하여 자식에게 부양받는 고령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1]. 특히,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고령자는 다양하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실질적인 서비스의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공식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보고되면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39]. 2006년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障害者自立支援法) 및 고령자학대방지법(高齢者虐待防止法)이 시행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계약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32], 최근에 성년후견제도를 ‘사회화’하는 것이 지향되면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스템으로서의 운용이 성년후견제도에 요구되어 그것이 완수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30][32].

우리나라는 이제 성년후견제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고, 실제 제도의 시행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4].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후견 유형과 임의후견 제도 등의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하므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15][17]. 2012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발표한 ‘성년후견관계사건의 현황(成年後見關係事件の概況)’[40]에 의하면 성년후견관계사건(후견·보좌·보조개시 및 후견감독인 선임 사건 포함)의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만큼의 많은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고찰과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년후견인의 확보,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 후견 관련 비용, 지원사업의 중복, 시민의 관심 부족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31][32][36][37][39]. 특히, 성공적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성년후견인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28][35]로 대두되고 있지만, 일본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약 250만 명의 성년후견인의 잠재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그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26].

제도의 시행을 앞둔 한국은 이러한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성년후견인의 확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의 유형 중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 현상에 따라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시민후견인이지만[28][30], 국내에서 이들에 대한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며[15][19], 구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시민후견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을 분석하여 성년후견인의 실태 및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그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는 시민후견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 2.1 성년후견관계사건의 현황

일본에서 2000년 4월부터 실시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이 제도의 이용현황[40]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전반적으로 이용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도 성년후견관계사건의 신청건수는 31,402건으로 나타나 2010년의 30,079건과 비교하여 약 4.5% 증가하였으며, 제도 초기인 2000년의 9,007건과 비교하여 약 3.5배 증가하였다. 전체 성년후견관계사건에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후견개시의 경우에 그 신청건수는 25,905건으로 나타나 제도초기인 2000년과 비교하여 약 2.5배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보좌개시 심판의 제기 건수는 3,708건으로 나타나 2000년과 비교하여 약 4.0배 증가하였으며, 보조개시 심판의 제기 건수는 1,144건으로 나타나 2000년과 비교하여 약 2.0배 증가하였다<sup>1)</sup>. 또한, 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의 제기 건수는 645건으로 나타나 2000년과 비교하여 약 1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단위: 건)

구분	후견 개시	보좌 개시	보조 개시	후견 감독인	합계
2000	7,451	884	621	51	9,007
2001	9,237	1,043	645	103	10,928
...					
2008	22,532	2,539	947	441	26,459
2009	22,983	2,837	1,043	534	27,397
2010	24,905	3,375	1,197	602	30,079
2011	25,905	3,708	1,144	645	31,402

자료: 각년도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 최고재판소.

다음으로 성년후견관계사건 중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연령대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우선 여성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2000년도에는 72.9%이었으나, 2011년에는 86.2%로 나타나 약 13.5%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가장 많은 61.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70대로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2000년도에는 약 42.6%이었으나, 2011년에는 65.9%로 나타나 23.3%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전체의 34.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70대로 23.5%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초고령자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상당비율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피성년후견인의 연령대별 현황(단위: %)

구분	80세 이상	70대	65-70세	60-65세	50대	40대	기타
남성	2000	15.7	15.9	11.0	10.0	19.8	11.8
	2001	16.8	19.1	9.8	9.3	19.0	11.2
	...						
	2009	31.0	23.3	8.4	7.3	12.5	7.8
	2010	32.6	22.8	8.1	7.7	11.0	7.9
	2011	34.4	23.5	8.0	8.0	10.3	7.3
여성	2000	40.4	25.0	7.5	4.6	9.8	5.9
	2001	41.7	24.9	7.3	4.9	9.3	5.5
	...						
	2009	57.3	23.1	4.1	3.3	5.0	3.3
	2010	59.1	22.0	4.2	3.5	4.6	3.2
	2011	61.1	21.1	4.0	3.3	4.3	2.8

자료: 각년도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 최고재판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게 된 주된 동기[40]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예금 및 부동산 등의 재산관리 및 처분’이 5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시설입소 등 개호보험계약에 따른 조치’ 및 ‘신상감호를 위해서’가 29.4%, ‘상속절차를 위해서’가 9.7% 이었다. 이것은 2000년도의 신청동기에서 ‘재산관리와 처분’이 62.5%에 이르렀으며, ‘개호보험계약’과 ‘신상감호’가 17.9% 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재산관리와 처분에 대한 비율이 크게 감소

1) 일본은 구민법상의 금치산·준금치산제도를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번식할 능력이 결한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견제도’(일본 민법 제7조)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번식할 능력이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좌제도’(동법 제11조), ‘후견 및 보좌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보호유형으로 ‘보조제도’(동법 제14조)로 개정하였다. 한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한국 민법 제9조)을, 동일한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동법 제12조)을, 동일한 이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후견’(동법 제14조의2)을 개시하게 된다.

한 반면에, 개호보험계약 등의 신상보호를 위한 신청 동기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2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

일본 최고재판소[40]에 의하면 2011년 성년후견관계 사건에서 성년후견인 등(성년후견인·보좌인·보조인: 이하 ‘성년후견인’이라고 함)과 본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 전문직능단체 및 시민후견인 등의 ‘제3자 성년후견인’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다음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 외의 친족 등의 이른바 ‘친족 후견인’이 선임되는 비율은 2000년도에는 91.0%에 이르렀지만,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63.5%, 2010년 58.6%이었으며, 2011년에는 약 55.6%까지 감소하였다. 반면에, 친족 이외의 제3자가 성년후견인에 선임된 것은 2000년도의 9.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36.5%, 2010년 약 41.4%이었으며, 2011년에는 44.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년후견인 선임 유형(단위: %)

구분	2000	2001	...	2009	2010	2011
가족 및 친족	91.0	86.0	...	63.5	58.6	55.6
제3자	9.0	14.0	...	36.5	41.4	44.4

자료: 각년도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 최고재판소.

성년후견제도 초기에는 가족 및 친족에 의한 후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써 가족 공동체 내에 있어서의 문제는 가족구성원 사이에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가족구성원 사이에 처리할 수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이나 국가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 혹은 사회규범이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22]. 그러나, 제3자인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족 및 친족과 같은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본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최근의 개인주의 사회적 성향이 반영되어 가족 이외의 성년후견인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점차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되면 가족 및 친족의 대응만으로는 후견인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며, 그들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14].

제3자 성년후견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직에 의한 후견은 그들의 대부분이 본업에 종사하면서 성년후견인의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 업무의 질은 물론 그들이 수임할 수 있는 후견사건의 건수에서도 그 한계가 있어서, 이미 전문직 후견인의 선임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표면화해 오고 있다[31].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최근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향후에 기대되는 것이 시민후견인과 법인후견이라 할 수 있다[29][30]. 특히, ‘성년후견의 사회화’가 공론화되면서 시민후견인의 형태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28][30], 이를 위해서 시민후견인 양성과 그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3. 시민후견인 활성화

### 3.1 시민후견인의 의의<sup>2)</sup>

일본은 제도 시행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 및 친족에 의한 후견이 약 5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위무능력제도와 관련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잔존하고, 친족이 더 잘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10]. 최근에는 친족후견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신에 제3자 성년후견인이 증가하고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제3자 성년후견인 확보의 과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단계에서는 제3자인 시민이 후견인의 역할 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제도 시행 2~3년이 지난 후 ‘성년후견의 사회화’로서 시민후견인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28]. 일본은 후견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우선 현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친족후견인에 대한 지원<sup>3)</sup>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후견인 양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후보자 등록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17][21][25][34].

- 2) 일본 成年後見法學會는 ‘市町村における権利擁護のあり方に関する研究(2007)’[33]에서 시민후견인에 대하여 ‘변호사나 사법서사 등의 자격은 없지만, 사회공헌을 위한 의욕이나 윤리관이 높은 일반시민 중에서 성년후견에 관한 일정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학습한 제3자 후견인 등의 후보자’라고 정의한다.
- 3) 2011년부터 친족후견지원사업(親族後見支援事業)의 실시를 통해서 친족후견업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친족후견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활동내용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과연, 사회의 후견 요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 속에서 친족이 없거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 또는, 그들에 대한 후견 업무가 일상적 생활 지원 중심으로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의 의식이 높은 일반 시민을 성년후견인으로 양성해, 그들을 통하여 후견인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강조되는 것이 시민후견인이다[33]. 시민후견인은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여부 및 활동 소속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32]. 우선 전문직에 의한 후견과 같이 후견보수를 주된 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일반형과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권리옹호활동으로서 후견수임에 임하는 자원봉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민후견인에게 그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시민후견인을 적극 양성하고 활용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자원봉사형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민후견인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와 시민후견인이 법인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로 구분하기도 한다.

### 3.2 시민후견인 양성과 활동

일본은 자산이나 친척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후견인의 양성과 그들의 저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14]. 일본에서도 본인 의사의 존중이나 정상화 이념의 적극적인 반영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상보호도 함께 중시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시민후견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36]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후견인 양성과정을 많이 개설하였다. 실제로 도쿄도(東京都)의 경우에는 ‘성년후견 활용을 위한 안심생활창조사업 실시요강(東京都成年後見活用あんしん生活創造事業実施要綱)’에 근거한 사회공헌형 후견인(社會貢獻型後見人)을 양성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후견인 활동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도쿄도의 후보자 양성사업을 위한 기초강습 수료생 현황(東京都後見人候補者養成事業基礎講習修了生選任状況)[24]을 보면 대대적인 공모를 통하여 2005년에는 450명이 응모하였지만, 1·2차 전형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선발된 60명이 5일간의 기초강습

을 이수하였다. 이러한 많은 지원자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참여인원이 60명에 그친 것은 시민후견인을 실제 필요로 하는 시정촌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실무연수를 요청하였지만, 이들을 위한 실무연수를 진행하기에는 여러 환경적 제한이 있었고, 더욱이 그 지역의 가정재판소에서도 강습 이수자가 시민후견인 후보자로 추천되더라도 선임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서[34] 당초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회적 상황으로 시민후견인에 대한 참여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2010년까지 291명이 수료하는데 그쳤으며, 그 동안 실제 선임된 경우는 72건에 불과하였다.

〈표 4〉 성년후견인 후보자 양성사업 기초강습수료생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수료	60	56	57	37	40	41	291
선임	·	1	8	18	27	18	72

자료: 後見人候補者養成事業基礎講習修了生状況. 東京都廳.

여기서 강습한 시민후견인이 담당하는 피성년후견인의 유형은 후견이 가장 많은 64건(88.9%)이었으며, 보좌 및 보조는 8건이었다. 피성년후견인의 성별은 여성이 46명(63.9%)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더 많았으며, 피성년후견인의 연령은 80대가 32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70대가 18명(25.0%)이었다.

비로소 2012년에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후견인에 대한 공식적인 현황이 처음 발표되었지만, 그 인원은 92명에 불과하여[40]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시민후견인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선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 개정을 통하여 시민후견인을 염두에 두고, 후견에 관한 체제의 정비 등을 의무화하였으며, 동법 제32조의 2(후견등과 관련되는 체제의 정비) 규정<sup>4)</sup>을 신설하여 시정촌에 대해서 법정후견의 운용기반 정비에 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것을 촉진하는 구체적 시책으로서 ‘시민후견추진사업(市民後見推進事業)’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31].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시민후견인 양성을 위한 연수의 실시 및 시민후견인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직체제의 구

4) 노인복지법 제32조의 2의 1항에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후견, 보좌 및 보조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제의 육성 및 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의 실시(양성 기능), 가정재판소에 대한 법정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취임지원 기능),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동법 제32조의 2의 2항에서 도도부현은 시정촌이 담당하는 각각의 조치에 대하여 조연 및 그 외의 원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축(시민후견인의 활용 등을 위한 지역의 실태 파악, 시민후견 추진을 위한 검토회 등의 실시)을 도모하며, 시민후견인의 적절한 활동을 위한 지원(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을 통하여 시민후견인이 곤란한 사례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기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시민후견인 양성 연수 수료자 등의 후견인 후보자 명부 등록으로부터 가정재판소에의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범위의 구축과 그 외 시민후견인의 활동의 추진에 관한 사업 등이 있다.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후생노동성은 향후 예측되는 고령자의 후견요구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시정촌에 대해 시민후견인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강화하여 이들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정촌을 실시주체로 하지만,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NPO 법인 등 적절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이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진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31]. 친족후견 중심에서 사회에서의 후견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나 시민후견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구조가 이루어졌다. 또한 행정역할의 확대로 후견업무에서 중요한 후견인의 선임과 그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법정후견의 운용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배정되어 그 동안 부족한 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법(가정재판소)과 행정(시정촌)과의 유기적 제휴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정재판소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준공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협의회, NPO 법인 등을 통하여 지자체와의 밀접한 제휴를 통해서 공익적인 관점으로 후견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시민후견인의 확대와 그를 위한 정책 추진은 성년후견제도 운용 전체를 획기적인 변혁으로 이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개호서비스의 기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介護サービスの基盤強化のための介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을 통하여 시민후견인의 활용이 더욱 강조되어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정비가 진행될 것이다[21].

### 3.3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의 시민후견인

시민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를 그들과 같은 시선으로 파악해 그들의 욕구와 입장을 이해하기 쉽고, 같은 지역의 생활자로서 친밀감이 우선 확보

되며 그들과 잦은 접촉이 가능하여 피후견인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21]. 그러나,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군 지역이나, 후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인근 지역과의 제휴를 통해서 후견업무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도쿄도(東京都) 내의 5개 시(調布市, 日野市, 多摩市, 狛江市, 稲城市)는 그 지역의 관계 기관 등과의 밀접한 제휴를 통하여 시민후견인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후견업무를 제공하는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를 2003년에 설립하여 다양한 후견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5개 지역에 걸치는 광역상태에서의 대처는 일본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며, 이 센터는 시민후견인이 후견을 담당할 수 있는 사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23].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필요한 시민 중에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이 없거나, 전문직 후견인에게 후견보수를 지불한 만한 자력이 없는 저소득층인 경우에 적합하다. 또한 학대, 권리침해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개인이 수임하려면 상당한 곤란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시민후견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성년후견인에게 교통비 등의 실비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월 재정수지가 흑자인 경우와 예금이 1,000만엔을 넘지 않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시민후견인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는 설립 이후에 2009년까지는 시민후견인 후보자를 해당 법인의 비상근 직원으로서 약 1년 간 고용해, 실제의 후견 업무에 종사하는 가운데 경험을 쌓아 가는 OJT 방식으로 운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서는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수생의 인원수가 한정되었고, 실무연수 수료생이 누적됨에 따라 5개 지역에서의 시민후견인의 추천도 증대해 왔기 때문에 참여 인원수의 확대가 필요하여 2010년도부터는 OJT방식으로부터 강의·연습 방식으로 시험적으로 변경했다. 이 방식에서는 후견업무에 대한 강의 31시간, 실제로 서류 작성이나 과정을 실시하는 연습 27시간, 법인후견을 수임하고 있는 현장의 방문 23시간 등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23]. 이러한 실무연수의 수료의 요건은 교육주체인 동경도와 해당 센터,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후견이 필요한 시정촌과의 격렬한 논의가 있었지만, 우선 법인에서의 프로그램 수료를 절대적 요건으로 하고, 강의의 이해도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에 대한 의식이나 제도의 기본이념에 대한 이해, 업무의 적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였다[34].

이 과정을 수료한 후보생의 후견업무에 대한 이해와 적응은 기존의 OJT 방식과 비교하여 다소 저하된 것으로 보였지만, 후견 수입 후에 시민후견인을 상담할 수 있는 전임상담원을 고용하여 수입 후의 협력체제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충해 가고 있다[23]. 이러한 과정 변경에 의해 시민후견인 양성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고용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연수생 신분으로서 교통비 등의 실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참여 인원을 증원했다. 약 6년간의 실무 연수생 교육과정의 경험을 거치면서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는 시민후견인을 양성하는 센터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민을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시민 후견인의 활약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34].

## 4. 한국에의 시사점

### 4.1 시민후견인 양성 방안

성년후견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후견인에 대한 한국에서의 준비는 법무부에서 성년후견인 양성과 관련한 용역 연구를 진행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후견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후견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강습을 시작한 단계에 있다. 그 과정 또한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후견업무보다는 전반적인 노인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둔 강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몇 개의 사회복지법인 등의 민간부문은 후견인 양성과정을 선구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후견제도의 이해 및 관련 법률, 실습 등의 여러 영역을 5일 내의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양질의 후견인 양성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시민후견인 양성을 민간에서 담당하기에는 강습의 전문성과 다양한 시민후견인 후보의 선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시민후견인의 후보자 자질에도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비영리법인이 함께 시민후견인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형태는 시민의 자발성을 존중할 수 있고, 그들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활동

의 공정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22]. 실제로 고령자가 많고, 후견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군 지역은 그 지역만의 자원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근 시 지역과의 협력을 통하여 하나의 센터로 운용하거나, 인근의 몇 개 군 지역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하여 그들에게 지리적·정서적으로 보다 익숙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자원을 갖고 후견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광역후견센터는 시민후견인의 양성과 활동을 도모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일본의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의 운용방식은 적절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센터에서 하는 업무의 성격은 시민후견인의 양성 및 피후견인과의 연계는 물론 후견제도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일본은 2010년 효고현 아시야시(兵庫縣 芦屋市)에서 자국 내 처음으로 종합적인 권리옹호센터를 설립하여 시민후견인의 양성을 도모하였고, 그들에 의해 다양한 후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32][41].

시민후견인으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으나,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시민후견인 후보자 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후견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은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실무적인 내용은 이 센터에서 연계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 제도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나 공유기능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요소가 될 것이므로[5] 조속히 실용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각 대학의 복지 관련 전공에서 이 영역을 독자적인 교과과정으로 편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민후견인 후보자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제도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와 각 지자체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시민후견인을 양성하고 그에 대한 활용이 성년후견제도의 조기 정착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광역후견센터 설립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4.2 시민후견인 관리와 감독

일본 최고재판소[40]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각 지역

의 가정재판소에 의해 해임된 경우가 2010년에 28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01년과 비교하면 약 5.5배에 이른다. 또한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여 동안 후견인의 부정으로 인한 피해총액은 약 26억 7,500만엔에 이른다. 후견인에 의한 발생하는 주요 부정행위는 재산에 대한 횡령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가 한국에서도 나타난다면 성년후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저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우선 복수후견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피후견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후견업무의 협동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한편, 그 과정에서 복수후견인간의 상호견제가 가능하므로 그들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견인뿐만 아니라 피후견인과의 주기적인 면담을 실시해 후견업무에 대한 진척 상황 확인 및 피후견인의 상황에 대한 확인 등을 실시하여 부당 내지 불법적인 후견업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후견인의 권한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윤리 및 인권교육과 더불어 형사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민후견인이 본의 아닌 행위로 피성년후견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책임의 면제 내지 경감을 해 주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시민후견인 등의 후견활동을 위한 폭넓은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 후견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14].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후견청(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OPG)을 설립하여 성년후견인을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후견인에 의해 요보호성년자에 대한 방임 또는 학대 사실이 발견되거나 의심된다면 공공후견청에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도 초기에는 재정 등의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지자체와 그 지역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후견센터에서 그 역할을 함께 담당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독립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은 더욱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 4.3 시민후견인 보호 및 지원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로부터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서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10]. 이를 통하여 성년후견인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후견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등 관련 보험의 도입에 대한 제반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후견센터는 법인으로서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그 역할을 이행하면서 시민후견인에 대한 지원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 및 관계 기관과 첫 면담을 할 경우에 동행하여 행정절차 내지 각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하거나, 시민후견인과 정기 및 수시면담을 통하여 그들의 신상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등의 후견인 선임 후의 지원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시민후견인이 후견업무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제도 필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요청되는 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직과의 업무 제휴가 중요하므로[21][27] 전문직 직능단체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역시 시민후견인의 부정행위 차단은 물론 시민후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 단체의 서포트를 활용하고 있다[20].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직능단체와 같은 신뢰가 높은 집단 및 그 구성원과의 교류를 통해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직 후견인에게 인계하거나 그들과 함께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후견인이 후견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시민후견인의 적절한 업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수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 시민후견인에게 있어서 보수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에게도 다른 성년후견인과 동등한 책임이 부여되므로 실비 이외의 보수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각각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년후견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년후견인에 대한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 최고재



판소의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있어 성년후견인의 부족 현상 및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 등에 의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민후견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의 후견업무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신상감독과 보호까지도 포함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인식하므로 피성년후견인에게 익숙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결국,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둔 한국에서는 요보호성년자가 친밀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시민후견인을 확보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규정과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고 운영되더라도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확대가 요구된다[14]. 또한, 피성년후견인이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임을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에 있어 증대되는 후견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후견인의 양성과 활용은 하나의 유효한 방편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나 노년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시민후견인으로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1] 김영필(2008). 일본의 고령화와 복지사회로의 이행. 일본문화연구, 25, 321-341.
- [2] 김주현(2012). 성년후견제도의 자기결정존중 원리를 중심으로 본 고령자 권리. 법학논총, 36(1), 547-575.
- [3] 김현진(2012).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가족법연구, 26(1), 71-126.
- [4] 남윤봉(2008). 고령화 사회에서의 성년후견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8(2), 705-731.
- [5] 박성호(2012). 스마트미디어시대의 정보통신정책과 정책홍보방안. 디지털정책연구, 10(1), 155-164.
- [6] 보건복지부(2012).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7] 송인옥, 백윤철(2001). 일본의 요보호 노인 기본권보호제도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법학논총, 35(1), 275-311.
- [8] 양숙미(2011).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과 노부모 돌봄과의 관계. 디지털정책연구, 9(5), 45-54.
- [9] 이승길(2009).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 문제점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11(2), 7-38.
- [10] 이영규(2010). 성년후견법안의 검토 및 향후 과제. 경남법학, 26, 209-247.
- [11] 이운환(2012). 노인의 건강 및 의료이용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2, 40-51.
- [12] 이정식(2009). 성년후견제도의 사회보장적 법적 방안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5(3), 251-294.
- [13] 임혜경(2009). 권리옹호 정책으로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문제점과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25(1), 121-144.
- [14] 전병주(2012). 고령화 사회에 있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저출산·고령사회 논문공모전 자료집.
- [15] 전형미(2008).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제3자 후견인 확보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11(1), 157-181.
- [16] 최윤영(2011).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제1차 장애인정책 토론회 자료집.
- [17] 최윤영(2012). 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17, 97-121.
- [18] 통계청(2012). 인구동향조사. 서울: 통계청.
- [19]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12).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세미나 자료집.
- [20] 經濟産業省(2010). 後見信託事業に関する検討. 調査實施報告書.
- [21] 高田洋子(2012). 市民参加と成年後見制度. 福井大學教育地域科學部紀要, 2, 269-292.
- [22] 菅富美枝(2011). イギリスの成年後見制度にみる市民社會の横想. The Hosei University economic review, 78, 3, 341-375.
- [23]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2011). 成年後見制度と市民後見人.
- [24] 東京都廳(2011). 後見人等候補者養成事業基礎講習修了生狀況.
- [25] 武藤忠義, 田中和代(2008). 成年後見制度を担う社會福祉士の育成について. 中部學院大學研究紀要, 9, 167-171.
- [26] 武市浩之(2011). 北海道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の現状と課題. 北海道医療大學看護福祉學部學會誌, 7, 5-12.

- [27] 芳賀裕(2010). 市民後見の意義と課題. 成年後見法研究, 7, 76-87.
- [28] 西尾敦史(2012). 成年後見の社會化における法人後見の意義: 沖縄縣内の市町村社會福祉協議會の取り組みを通して. 地域研究, 9, 13-26.
- [29] 山口春子(2008). 成年後見制度: 「自己決定の尊重」と「保護」の理念の調和. 東京成徳大學研究紀要, 15, 61-73.
- [30] 上山泰(2008). 専門職後見人と身上監護. 民事法研究會.
- [31] 上山泰(2012). 日本における公的成年後見制度の導入について—ドイツの運用スキームを参考に—.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雑誌, 641, 44-58.
- [32] 上田晴男(2010). 權利擁護支援としての成年後見: 地域における權利擁護支援システムの構築を目指して.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雑誌, 625, 1-11.
- [33] 成年後見法學會(2007). 市町村における權利擁護のあり方に関する研究. 報告書.
- [34] 小林有紀子(2011). 成年後見制度における市民後見人の養成と活用: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の取り組みからの考察. 21世紀社會デザイン研究, 10, 247-255.
- [35] 新井誠(2009). 法人後見の意義と役割. 實踐成年後見, 29, 4-17.
- [36] 岩間伸之(2011). 成年後見制度と社會福祉: その接点から新たな可能性を探る.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雑誌, 627, 19-29.
- [37] 中村康子(2005).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に関する一考察: 介護保險制度ドイツと日本の比較を通して. 北方圏生活福祉研究所年報, 11, 39-51.
- [38] 佐藤繭美(2010). 成年後見制度をめぐる課題: 福祉的經營の視点から.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雑誌, 625, 12-22.
- [39] 佐藤英晶(2010). 特別養護老人ホーム入所に關わるアカウントビリティとアドボカシー. 帶廣大谷短期大學紀要, 47, 1-10.
- [40] 最高裁判所(2012). 成年後見關係事件の概況.
- [41] 芦屋市權利擁護支援センター(2010). 全國權利擁護支援フォーラム 資料集.

## 전 병 주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2009년 8월 : 충북대학교 법학과(법학석사)
  - 2012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 사회보장, 노인, 장애인
- E-Mail : okbj@cbnu.ac.kr